조선총독부관보(朝鮮總督府官報) 제1916호(號) 1933(昭和 8)년 6월 1일 목요일

○ 고 시(告示)

조선총독부고시(朝鮮總督府告示) 제256호(號)

1927(昭和 2)년 조선총독부고시(朝鮮總督府告示) 제233호(號)(시베리아경유 유럽・아시아 여객 및 수하물 연락운수규칙[Siberia經由歐亞旅客及手荷物聯絡運輸規則]) 중(中) 1933(昭和 8)년 6월 1일부터 아래[左]와 같이 개정(改正)함.

1933(昭和 8)년 6월 1일 조선총독(朝鮮總督) 우가키 가즈시게(宇垣一成)

제4조(條) 경로표(徑路表) 중(中) 「카우나스(Kaunas)」, 「키예프(Kiev)」, 「호이니체(Chojnice)」의 행(行)을 아래[左]와 같이 개정(改正)함.

카 우 나 스(Kaunas)	하얼빈(Harbin), 리가(Riga) 경유(經由)
호 이 니 체(Chojnice)	하얼빈(Harbin), 틸지트(Tilsit) 또는 리가(Riga) 경유(經由)
키 예 프(Kiev)	

제6조(條)의2에 아래[左]의 항(項)을 추가(追加)함.

일본국유철도(日本國有鐵道) 및 외국측(外國側) 운수기관(運輸機關)에서는 개인여객(個人旅客)에 대해 부산경유(釜山經由) 및 다롄경유(大連經由)의 두 가지 경로(徑路)에 공통(共通)의 승차권(乘車券)을 발행(發行)함.

제9조(條)의2 제6조의2에 정(定)한 공통승차권(共通乘車券) 소지(所持)의 여객(旅客)은 공통경로(共通徑路) 중(中) 무엇을 선택(選擇)해도 임의(任意)로 함. 단(但) 단체여객(團體旅客)은 미리[豫] 그 경로(徑路)를 지정(指定)하고, 이것에 의(依)해 여행(旅行)하는 것을 요(要)함.

제14조(條)제2호(號) 중(中) 「창춘[新京]—하바롭스크(Khabarovsk)」 및 「창춘[新京]—블라고베셴스크(Blagoveschchensk)」의 행(行)을 아래[左]와 같이 개정(改正)함.

창춘[新京]—하바롭스크(Khabarovsk)	하얼빈(哈爾賓) 포그라니치나야(Pogranichnaya)	1,569	금불(金弗)	35.15	27.62	18.43	12.60	8.84	5.85
창춘[新京]—블라고베셴스크(Blagoveschchensk)	동(同)	2,335	동(同)	45.28	37.76	25.19	15.17	11.41	7.53

동조(同條)동호(同號) 중(中) 「창춘[新京]—탈린(Tallinn)」의 행(行) 이하(以下)를 아래[左]와 같이 개정(改正)함.

창춘[新京]—탈린(Tallinn)	하얼빈(哈爾賓)	8,680	금불(金弗)	147.84	135.52	90.38	43.21	37.05	24.72
창춘[新京]—리가(Riga)	동(同)	8,914	동(同)	139.05	126.11	84.30	41.30	34.83	23.37
창춘[新京]—카우나스(Kaunas)	하얼빈(哈爾賓) 리 가(Riga)	9,208	동(同)	144.85	129.53	86.54	44.20	36.54	24.49
창춘[新京]—바르샤바(Warszawa)	하얼빈(哈爾賓)	9,201	동(同)	144.31	129.76	86.53	43.93	36.65	24.47
창춘[新京]—프라하(Prague)	하얼빈(哈爾賓) 바르샤바(Warszawa)	9,981	동(同)	157.55	137.70	91.83	50.55	40.62	27.12
창춘[新京]—비엔나(Vienna)	동(同)	9,899	동(同)	158.87	139.04	92.39	51.21	41.29	27.40
창춘[新京]—베를린(Berlin)	하얼빈(哈爾賓), 바르샤바(Warszawa), 틸지트(Tilsit) 또는 리가(Riga)	9,770 9,805	동(同)	153.59	135,88	90.56	48.58	39.71	26.49

창춘[新京]—함부르크(Hamburg), 알토나(Altona)	동(同)	10,060 10,095	동(同)	160.17	140.44	93.60	51.68	41.99	28.01
창춘[新京]—런던(London)	하얼빈(哈爾賓), 바르샤바(Warszawa), 틸지트(Tilsit) 또는 리가(Riga), 후크반홀란드(Hook van Holland), 또는 플리싱언(Vlissingen)	10,784 10,819	동(同)	182.78	156.40	108.84	63.17	49.97	35.63
창춘[新京]—로마(Rome)	하얼빈(哈爾賓), 바르샤바(Warszawa), 비엔나(Vienna)	11,194	동(同)	187.77	159.04	103.95	65.66	51.29	33.18

제15조 단체여객운임할일률표(團體旅客運賃割引率表) 운수기관(運輸機關)의 난(欄) 중(中) 「외국측운수기관(外國側運輸機關)」을 「외국측운수기관(이탈리아국유철도[Italy國有鐵道]의 구간[區間]에 대해서는 할인[割引] 없음)」으로 개정(改正)함.

제15조(條)의2제2호(號) 표(表) 중(中) 「창춘[新京]—하바롭스크(Khabarovsk)」 및 「창춘[新京]—블라고베셴스크(Blagoveschchensk)」의 행(行)을 아래[左]와 같이 개정(改正)함.

창춘[新京]—하바롭스크(Khabarovsk)	하얼빈(哈爾賓) 포그라니치나야(Pogranichnaya)	25인(人) 이상(以上)	금불(金弗)	26.62	20.98	14.01	9.53	6.71	4.43
창춘[新京]—블라고베셴스크(Blagoveschchensk)	동(同)	동(同)	동(同)	34.34	28.70	19.16	11.49	8.67	5.71

동조(同條)동호(同號) 중(中) 「창춘[新京]—탈린(Tallinn)」의 행(行) 이하(以下)를 아래[左]와 같이 개정(改正)함.

창춘[新京]—탈린(Tallinn)	하얼빈(哈爾賓)	25인(人) 이상(以上)	금불(金弗)	112.25	103.01	68.71	32.77	28.14	18.78
창춘[新京]—리가(Riga)	동(同)	동(同)	동(同)	105.66	95.96	64.15	31.34	26.48	17.77
창춘[新京]—카우나스(Kaunas)	하얼빈(哈爾賓) 리 가(Riga)	동(同)	동(同)	110.01	98.52	65.83	33.51	27.76	18.61
창춘[新京]—바르샤바(Warsaw)	하얼빈(哈爾賓)	동(同)	동(同)	109.60	98.70	65.82	33.31	27.84	18.60
창춘[新京]—프라하(Prague)	하얼빈(哈爾賓) 바르샤바(Warszawa)	동(同)	동(同)	119.53	104.65	69.80	38.28	30.82	20.58
창춘[新京]—비엔나(Vienna)	동(同)	동(同)	동(同)	120.53	105.66	70.22	38.77	31.33	20.80
창춘[新京]—베를린(Berlin)	하얼빈(哈爾賓), 바르샤바(Warszawa) 틸지트(Tilsit) 또는 리가(Riga)	동(同)	동(同)	116.57	103.29	68.84	36.79	30.14	20.12
창춘[新京]—함부르크(Hamburg), 알토나(Altona)	동(同)	동(同)	동(同)	121.50	106.71	71.12	39.26	31.85	21.26
창춘[新京]—런던(London)	하얼빈(哈爾賓), 바르샤바(Warszawa), 틸지트(Tilsit) 또는 리가(Riga), 후크반홀란드(Hook van Holland), 또는 플리싱언(Vlissingen)	동(同)	동(同)	138.47	118.68	82.55	47.74	37.84	26.98
창춘[新京]—로마(Rome)	하얼빈(哈爾賓), 바르샤바(Warszawa), 비엔나(Vienna)	동(同)	동(同)	146.41	123.48	80.56	51.71	40.24	25.97

제18조(條) 중(中) 「운수교육세(運輸敎育稅), 적십자세(赤十字稅),」를 삭제(削除)함.

제26조(條) 수하물(手荷物)을 탁송(託送)할 때는 여객(旅客)은 승차권(乘車券)을 정시(呈示)해야 하는 것으로 함.

제6조(條)의2에 정(定)한 공통승차권(共通乘車券) 소지(所持)의 여객(旅客)은 수하물탁송(手荷物託送) 때 그 운송경로(運送徑路)를 지정(指定)해야 하는 것으로 함.

제26조의2 수하물(手荷物)은 승차권면(乘車券面)의 착역항(著驛港)까지 그 경로(徑路: 공통승차권[共通乘車券]의 경우는 여객[旅客]의 지정경로[指定徑路])에 의(依)해 연락운송(聯絡運送)의 취급(取扱)을 함. 연락운임(聯絡運賃)이 정(定)해져 있는 경우에서는 전항(前項)에 의(依)한 것 외(外) 일부(一部) 구간(區間)에 대해서도 연락운송(聯絡運送)의 취급(取扱)

을 함.

연락운임(聯絡運賃)이 정(定)해지지 아니한 역항(驛港) 간(間)의 운송(運送)은 지방적 규칙(地方的規則)에 의(依)해 이것을 행(行)함.

제27조(條)제2항(項) 및 제3항(項)을 아래[左]와 같이 개정(改正)함.

여객(旅客)은 폴란드철도(Poland鐵道) 및 런던(London) 앞[宛] 수하물(手荷物)을 탁송(託送)할 때는 각각(各各) 적환수수료(積換手數料), 인지세(印紙稅) 및 통관수수료(通關手數料) 또는 특종취급수수료(特種取扱手數料)를 지불(支拂)하는 것으로 함.

소비에트철도선(Soviet鐵道線) 내(內)의 운송(運送)에 대해서는 수하물탁송(手荷物託送) 때 금불화(金弗貨)로써 요상액(要償額・assessed value)[1]의 표시(表示)를 하는 것을 득(得)함. 이 경우에서는 요상액표시료(要償額表示料)를 지불(支拂)하는 것으로 함.

제28조(條)제2호(號) 표(表) 중(中) 「모스크바통관수하물적환수수료(Moskva通關手荷物積換手數料)」의 난(欄)을 삭제(削除)하고, 「가격표기료(價格表記料)」를 「요상액표시료(要償額表示料)」로, 「창춘[新京]—레닌그라드(Leningrad)」의 행(行) 이하(以下)를 아래[左]와 같이 개정(改正)함.

창춘[新京]—레닌그라드(Leningrad)	하얼빈(哈爾賓)	금불(金弗)	6.06	—	0.111	1.110
창춘[新京]—하르키우(Kharkiv)	동(同)	금불(金弗)	6.13	—	0.113	1.125
창춘[新京]—탈린(Tallinn)	동(同)	금불(金弗)	6.35	—	0.114	1.140
창춘[新京]—리가(Rīga)	동(同)	금불(金弗)	6.43	—	0.113	1.125
창춘[新京]—카우나스(Kaunas)	하얼빈(哈爾賓), 리가(Rīga)	금불(金弗)	6.54	—	0.113	1.125
창춘[新京]—스톨프츠에[2]	하얼빈(哈爾賓)	금불(金弗)	6.15	0.01	0.114	1.140
창춘[新京]—바르샤바(Warsaw)	동(同)	금불(金弗)	6.44	0.02	0.114	1.140
창춘[新京]—로즈(Rose)	하얼빈(哈爾賓), 바르샤바(Warszawa)	금불(金弗)	6.51	0.02	0.114	1.140
창춘[新京]—포즈난(Poznań)	동(同)	금불(金弗)	6.59	0.02	0.114	1.140
창춘[新京]—키예프(Kiev)	하얼빈(哈爾賓), 리가(Rīga)	금불(金弗)	6.85	0.01	0.113	1.125
창춘[新京]—호이니체(Chojnice)	동(同)	금불(金弗)	6.91	0.02	0.113	1.125
창춘[新京]—프라하(Prague)	하얼빈(哈爾賓), 바르샤바(Warszawa)	금불(金弗)	6.98	—	0.114	1.140
창춘[新京]—비엔나(Vienna)	동(同)	금불(金弗)	7.04	—	0.114	1.140
창춘[新京]—베를린(Berlin)	하얼빈(哈爾賓), 바르샤바(Warszawa) 틸지트(Tilsit) 또는 리가(Rīga)	금불(金弗)	6.85	—	0.114 0.113	1.140 1.125
창춘[新京]—함부르크(Hamburg), 알토나(Altona)	동(同)	금불(金弗)	7.15	—	0.114 0.113	1.140 1.125
창춘[新京]—라이프치히(Leipzig)	동(同)	금불(金弗)	7.08	—	0.114 0.113	1.140 1.125
창춘[新京]—뮌헨(München)	동(同)	금불(金弗)	7.32	—	0.114 0.113	1.140 1.125
창춘[新京]—로테르담(Rotterdam))	동(同)	금불(金弗)	7.37	—	0.114 0.113	1.140 1.125
창춘[新京]—후크반홀란드(Hook van Holland), 또는 플리싱언(Vlissingen)	동(同)	금불(金弗)	7.43	—	0.114 0.113	1.140 1.125
창춘[新京]—베네치아(Venezia)	하얼빈(哈爾賓), 바르샤바(Warszawa), 타르비시오(Tarvisio)	금불(金弗)	7.79	—	0.114	—
창춘[新京]—로마(Rome)	하얼빈(哈爾賓),바르샤바(Warszawa), 비엔나(Vienna)	금불(金弗)	8.18	—	0.114	—

동조(同條) 비고(備考)4 중(中) 「운수교육세(運輸教育稅: 운임[運賃]의 약 2푼[分])」의 아래

1) 역자: 탁송(託送) 전(前) 화물(貨物)・소화물(小貨物)에 대해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배상(賠償)에 참고하기 위해 화물 또는 소화물의 가치를 측정하여 물표(物標) 또는 탁송서(託送書)에 표시하는 금액을 말한다.

[左]에 「, 모스크바통과수하물(Moskva通過手荷物)의 적환수수료(積換手數料: 10킬로그램[瓩・kg]당[當] 6센트[仙・cent])」를 추가(追加)하고, 비고(備考)5 중(中) 「가격표기료(價格表記料)」를 「요상액표시료(要償額表示料)」로 개정(改正)함.

제30조(條) 중(中) ホ호(號)를 아래[左]와 같이 개정[改]한다.

마 요상액표시(要償額表示)가 있는 수하물(手荷物)에 대해서는 그 요상액(要償額)

제34조(條)제1항(項) 중(中) 「운수교육세(運輸敎育稅) 및」을 삭제(削除)함.

제47조(條) 중 「및 수하물(手荷物)의 수탁(受託)」을 삭제(削除)함.

---

2) 역자: 폴란드와 소비에트 연방의 국경역. 현재 벨라루시령(領) 스토부시역?.